

# 직원인사위원회 규정

2016년 10월 04일 제정 2022년 06월 09일 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.) 직원 인사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직원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인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인사위원이 된다.

**제3조(위원장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. 단,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 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
**제4조(임기)** ① 인사부서의 장은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 
② 제1항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 
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 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수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 
1. 직원의 채용, 승진, 전보, 해임, 포상 등에 관한 사항  
2.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
3. 기타 직원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**제7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제척사유)**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거나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다.

**제9조(간사 등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직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.

**제10조(비밀유지)** 위원회 위원은 회의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